

주택법개정법률

법률 제7156호

2004. 1. 29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상복합건축물의 청약과열 현상 및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주택의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도 일반 주택과 동일한 분양 및 공급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주상복합건

축물에 대한 청약과열현상을 방지하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법 제38조).

나. 주택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투기지역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안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거래당사자는 주택의 거래금액 등 거래내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래가에 기초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80조의2).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인에게 계약서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법 제80조의3).

건교부 인사

2004. 1. 31

<과장급 전보> △국토지리정보원 측지과장 홍기범 △토지국 토지정책과 국가지리정보팀장 최원규 △도시국 건축과장 장기창 △육상교통국 운수정책과장 박정희 △기술안전국 안전정책과장 강병욱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김정수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김익현 △" 도시시설국장 장성호 △" 흥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전병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이필우 △" 도시시설국장 윤성오 △"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이형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최대진 △" 도시시설국장 박용덕 △"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윤영식 △"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박종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이규식 △" 도시시설국장 권병윤 △항공안전본부 항공보안과장 정상규 △"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과장 유연동 △" " 공항시설국장 조노영 △낙동강홍수통제소장 김동국 △금강홍수통제소장 김학재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건설교통연수부 학사과장 이용갑 △국토지리정보원 관리과장 김형수

<서기관 전보> △감사관실 참여담당관실 이종배 조무영 △기술안전국 기술정책과 임영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 임병욱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건설교통연수부 홍명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장 임재홍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최동식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장 성배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이용규

2004. 1. 30

<국장급 전보> △공보관 이재홍 △건설경제심의관 한만희 △수송물류심의관 이인수 △국토정책국장 유덕상 △주택국장 권도엽 △기술안전국장 최영철 △수자원국장 전병성 △대전시광역교통정책실 광역교통국장 유승화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건설교통연수부장 홍순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정종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권진봉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원인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이용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서정석 △항공안전본부 서울지방항공청장 이석암 △한강홍수통제소장 박영준